
입 법 정 보

2017-10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5
3.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5
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
5.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7
7.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8
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8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9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9
11.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
1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
1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11
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7.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7
18.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7
1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8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18
2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8
22.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9
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19
2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행정자치부)	20

2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22
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22
2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23
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4
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4
3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5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26
3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8
33.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28
3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28
3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29
3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29
3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30
38.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1
39.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2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3
4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3
4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3
4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	34
4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34
4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	35
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35
4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36
48.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37
49.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38
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38

5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39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1
5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2
5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43
5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43
5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44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44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5. 1. • 마감일자 : 2017. 6. 12.
- 행정기관이 2017년부터 정책연구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관련 근거와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근거와 서식 신설(안 제37조)
정책연구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별 운영 서식을 표준화하여 업무효율을 향상하고자 함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5. 1. • 마감일자 : 2017. 6. 12.
- 정부비축 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위탁되어 있으나, 산지에서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매하기 위해 비축사업 업무의 일부를 수협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수협중앙회장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비축사업 업무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8항 신설)

3.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5. 1. • 마감일자 : 2017. 6. 12.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 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유능부원(Able seafarer) 자격증명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개정규정상의 승무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 유능부원 자격요건

을 명시하고, 신청서 및 자격증 등 서식 규정 (안 제1조의 2, 별표2,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의2 서식)

나.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및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시 신청자(선원)가 선박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7호의5 서식, 별지 제17호의7 서식)

다. 기관 명칭 변경(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수산청) 반영(별지 제17호의6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의3 서식, 별지 제8호의4 서식 등)

라. 임금채권보장 확대(임금 3개월/퇴직금 3년→4개월/4년)에 따라 서식 반영(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7호의7 서식, 별지 제17호의8 서식)

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5. 1. • 마감일자 : 2017. 6. 12.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운법 관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며 여객선사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상향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을 명확화 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5. 1. • 마감일자 : 2017. 6. 12.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운법 관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며 여객선사 안

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정하고, 법에 규정된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 조치사항 정비(안 제5조)

시행규칙에 규정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나. 지원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기준 설정(안 제19조의2)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문성과 전담 인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

다.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가담자 제재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의4)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사용·발행한 유류구매카드나 증빙자료 미 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라.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3조의3)

법 제4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응급환자 등의 이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대 승선인원 초과 운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마.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5. 1.
- 마감일자 : 2017. 6. 12.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향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정비(안 제3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과정 신설

- 나. 시·도지사의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수정(별지 제1호서식)

해당 무형문화재의 개요,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종합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세부 제출자료로 제출

7.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5. 1. • 마감일자 : 2017. 6. 12.
- 라오스, 이란, 요르단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3명 증원하며, 무관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외교부 이외에도 사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인)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5. 2. • 마감일자 : 2017. 6. 12.
-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외국민등록제도 상으로는 말소불가, 소급등록 등의 문제로 재외국민등록 기록과 현실이 불일치하여 재외국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여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현실화 및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등록사항의 변경 (안 제3조)
여권번호, 체류국 입국일 등 재외국민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도록 함.
- 나. 등록기간 등의 현실화 (안 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등록기간 및 이동신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변경신고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30일로 늘림.

다. 말소제도의 도입 (안 제13조, 제14조)

현행법에서는 말소신고 절차 및 직권말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귀국하여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서도 등록 말소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말소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라. 소급등록금지 정책의 도입 (안 제15조)

귀국하거나 거주국을 달리하여 거주지를 옮긴 자가 이전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소급 재외국민등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문화 함.

마. 신고제 합리화 (안 제4조제3항, 제4항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접수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의 접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함.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5. 2. • 마감일자 : 2017. 5. 17.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 징수유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428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필요

10. 법무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5. 2. • 마감일자 : 2017. 5. 8.
-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두는 특정범죄자관리과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이민특수조사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각각 연

장하려는 것임

11.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5. 2. • 마감일자 : 2017. 6. 12.
- 현재 무선국 개설신고 시 무선마이크의 사용 장소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일 주파수 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타 무선기기의 가용채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함. 이에 별지 제28호 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란에 ‘※ 무선마이크는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가 실내/실외인지 구분하여 표시’를 추가하여 사용 장소를 실내/실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기 위함

1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5. 2. • 마감일자 : 2017. 6. 12.
-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를 일부 확대(안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
 - 1) 음악사용률이 높고, · 영업에서 음악중요도가 높은 ①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호프집, 커피숍 등), ②종합스포츠시설 및 체력단련장(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 등)을 추가 포함
 - 2)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면적 3,000㎡이상) 중 기존 시행령 제11조에서 제외되었던 ①복합쇼핑몰, ②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단, 전통시장은 제외)
- 나. 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이 허용되는 대상 시설 및 기간 조정(안 제11조 제7호)
 - 1) 1회 시청·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
 - 농어촌 소재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보장

1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2. • 마감일자 : 2017. 6. 12.
- 식품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 및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용 품종 및 종자를 개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 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함
-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정의 신설 및 타인 명칭 사용 금지(안 법 제2조 제8호, 제14조제11항, 제38조제2항)
국가에서 지정한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및 정의 신설, 명칭 무단 사용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법 제4조제1항, 제3항, 제4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 위원의 공무원 의제 적용(법 제5조제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 라.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근거 마련(법 제2조제9호, 법 제4조제2항제3의3호,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능성식품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근거 마련
- 마. 식품중소기업육성 지원 근거 마련(법 제2조제10호, 법 제11조의2 신설)
식품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개발, 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바. 식품가공용 종자 및 품종 개발 추진 근거 마련(법 제13조의3 신설)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도록 식품가공에 적합한 종자 및 품종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회수·중
단 의무화(법 제14조제7항, 제9항)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회수
및 지원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시 자금회수 및 지급중단을 반드시 하
도록 하고, 지원금 회수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
며, 지원금 중단 관련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함

아.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명확화(법
제26조제2항)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정기심사 외에 인증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 필요한 서류 열람, 시료 조
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함

자.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기준 명확화(법 제29조제1항, 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전업·폐업 등으로 생산 또
는 판매가 어려운 경우 당연 취소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대한민국식품명인이나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의 해당식품
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강화(법 제36조제1항)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만든 제품,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만든 제품 및 음식점등을 각각 지정받거나
인증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
우 기존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
음.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 함

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 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2.
- 마감일자 : 2017. 6. 12.

○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시설물관리계획의 제출(안 제2조)

시설물관리계획 중 연도별관리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중기관리계획은 5년 마다 제출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통보 등(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종시설물을 지정·해제 시 관리주체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요청(안 제4조)

3종시설물 지정·해제 요청서식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용도변경 증명 자료 등의 첨부서류를 정함

라.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안 제9조)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5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마. 시설물의 안전등급 변경 통보(안 제11조)

시설물의 지정된 안전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바.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안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10년, 그 기초자료는 제출일로부터 5년으로 보존기간을 정함

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 거짓 및 부실 작성 등의 판단기준(안 제13조)

육안점검 조사결과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누락한 경우 등 복제, 거짓 및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을 정함

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의 통보(안 제19조)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도록 함

자. 위험표지의 설치기준(안 제20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기준을 정함

차. 유지관리·성능평가 지침(안 제31조)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성능평가 지침에 포함하도록 함

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안 제32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기술자의 교육 이수 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포함할 사항으로 정함

타. 실태점검 등(안 제3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대상을 안전등급이 D 또는 E인 민간주체 소관시설물로 정함

2)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2. • 마감일자 : 2017. 6. 12.

○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 대행 시설물(안 제3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대행이 필요한 시설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설물로 규정함

나. 중기관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중기관리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중기관리계획은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 성능평가의 결과,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 이행실적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등을 제3종시설물의 지정대상으로 정함

2) 보수·보강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계속적 관리가 불필요한 시설물 등을 제3종시설물 해제대상으로 정함
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안 제10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지침에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지정·해제 절차, 안전점검·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안 제13조)

제1종,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바. 책임기술자의 자격(안 제16조)

정기안전점검은 초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은 중·고급기술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는 특급기술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정함

사.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안 제18조)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의 시설물, 그 밖에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물에 대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긴급안전점검의 사유로 정함

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안 제20조)

안전점검·진단의 개요, 자료 수립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방법 등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함

자.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안 제38조)

도로, 철도, 항만, 다목적댐, 공항, 하천, 상수도 등 주요 SOC를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로 정함

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안 제39조)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 종합성능,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등을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함

카. 성능평가의 실시 등(안 제41조)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5년에 1회 이상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의 항목 중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타.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안 제45조)

유지관리·성능평가 장비, 성능목표의 설정, 항목별 점검 및 평가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함

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50조)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및 수립 지원,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지원 및 연구,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지원, .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발간 등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의 업무로 정함

하. 실태점검 및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안 제57조 및 제58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사유로 정함

3)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안전상태 및 유지관리 실태,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2.
- 마감일자 : 2017. 5. 12.

- 현행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식이 행복e음에서 자동인식·검증은 가능하나, 행복e음이 여러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분류인식하고, 서식 변경 등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 모양을 일부 변경하는 것임
- 가.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4호서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자구, 내용변경 없이 서식 좌우측의 앵커(■ 표시) 위치를 변경하여, 행복e음에서 서식을 분류인식할 수 있도록 함

17.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5. 4. • 마감일자 : 2017. 6. 13.
- 「항만법」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으로 항만건설장비선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박검사를 받는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항만법」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적용대상으로 항만건설장비선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07.11.4 이전에 건조되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부선이라도 「항만법」 제29조의3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18.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4. • 마감일자 : 2017. 6. 13.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트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5. 4. • 마감일자 : 2017. 5. 10.
- 산림항공본부 제주격납고 준공에 따른 항공기 운영 및 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7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2017. . . 시행)됨에 따라 증원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전일제공무원 직위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5. 4. • 마감일자 : 2017. 6. 13.
-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16.12.20)된 바,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4)을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4. • 마감일자 : 2017. 6. 13.
-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해약,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동 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국민주택채권 발행, 해약, 상환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발행, 해약, 상환 건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등기, 등록, 면허, 허가, 계약) 1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채권을 발행, 해약, 상환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각각 1건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주택채권 위탁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탁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함.(안 별표3 비고 제2호 신설)

22.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5. 4. • 마감일자 : 2017. 6. 13.
- “경찰복제 종합개선” 관련, 점퍼(봄가을, 겨울) 및 흑한파카 등 개선된 복제를 반영하고 신·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과 함께 불필요한 제식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 관련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 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
 - 나. 개선한 점퍼(봄가을, 겨울) 및 흑한파카 등의 도형, 제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 다. 개선 점퍼 관련, 신 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부칙)
 - 라. 계급장 등 다는 위치 및 경찰화 제식 내용 중 뒷굽 높이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개선(안 별표2, 별표3)

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8. • 마감일자 : 2017. 6. 19.
-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타이어의 허용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타이어제작·수입업자로 하여금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표시하게 하는 등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도로변 소음을 저감하려는 것임
- 가.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도입 등(안 제44조의3)
 - 1)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허용기준 마련
 - 2) 타이어제작자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3) 타이어제작자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

야 함

나. 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안 제44조의4)

- 1) 환경부장관은 타이어를 검사한 결과 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타이어제작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2) 조치명령 불이행 또는 이행하더라도 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 타이어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음

다. 보고와 검사(안 제47조) 및 청문(안 제51조)

- 1) 환경부장관은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 제작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공무원의 현장 확인 지시를 할 수 있음.
- 2) 타이어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라. 벌칙(안 제57조) 및 과태료(안 제60조)

- 1) 타이어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2) 타이어 소음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음성능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5. 8. • 마감일자 : 2017. 6. 19.

- 최근 지능정보 관련 신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내부 또는 공공·민간간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경험·직관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및 민간 보유 데이터, 인터넷의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목적,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 제4조)
 - 1)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 활성화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공공기

관에 제도 및 환경 정비 등 기반 조성, 민간전문가 참여로 객관성·정확성·공정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개, 자원 마련 등 책무를 부여함

2)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는 업무혁신, 행정서비스 향상, 실시간대응, 위험요소 제거, 사전예측 등 데이터 분석·활용이 필요한 분야에서 발굴·추진하도록 함

나. 추진 체계 규정(안 제6조 ~ 제8조)

기본계획 및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규정함

다. 추진 절차 규정(안 제9조 ~ 제11조)

1)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굴·선정하는 과제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추진

2) 공공기관은 자체과제 및 지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갈등 조정 역할을 부여함

3)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가 등에 대한 사항은 협약을 통해 결정

라. 기반 구축 규정(안 제12조 ~ 제22조)

1) 공공기관은 생성·수집하여 보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자부장관은 이를 통합·연계한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데이터맵을 구축·운영

2)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수집·저장·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유·활용을 위한 정부통합데이터관리플랫폼 구축

3)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지정 및 자체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 행자부장관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4) 공공기관은 자체 점검·평가 실시, 행자부는 시범사업,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표준화, 우수사례 발굴·홍보·포상, 표준분석모델 정립·확산 등 추진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사항을 규정함

2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5. 8. • 마감일자 : 2017. 6. 19.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투망어업이 신고어업에서 삭제 및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4737호 2017. 3. 21 개정·시행됨)으로 천일염업이 허가어업에 포함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허가어업에서 누락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반영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서식(별지 2호)을 개정하려고 함. 또한 수산직불금 신청인의 가구원 중 미성년자의 주민번호 의무 기재를 미성년 가구원이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약정 신청서 서식(별지 3호)에 기입토록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허가어업 부분에 육상해수 양식과 염전을 추가하고 신고어업에 투망 어업 삭제 등 서식을 정비(별지 제2호)
- 나. 미성년 가구원이 고액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주민번호와 성명 등을 지급약정 신청서의 가구원란에 기재하지 않도록함(별지 제 3호 서식)

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8. • 마감일자 : 2017. 6. 19.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 (안 제7

조제1항제4호)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 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전자문서를 포함 (안 제7조제1항)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직접 신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온라인 웹)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함

다.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 (안 제7조제1~4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른 신고기관의 변경 (지자체 → 해경서)에 따른 개정임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라.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 (안 별지 제2호, 제2호의2~3, 제3호 서식)

-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서식을 변경함

2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8.

• 마감일자 : 2017. 6. 19.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 (안 제5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 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나. 보험금액을 공제금액도 포함하는 공제등 금액으로 개정 (안 제6조)

-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 변경(안 제12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른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신고기관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에서 지자체를 삭제하고 해양경비안전서를 추가함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 라. 일몰제 대상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 으로 개정 (안 제13조)
 - 규제 조항인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및 보험금액 조항의 “보험” 을 “보험등” 으로 변경함
-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보험” 을 “보험등” 으로 개정 (안 별표)

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5. 8. • 마감일자 : 2017. 6. 19.
- 「고등교육법」 개정(' 17.3.21.)에 따라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5. 8. • 마감일자 : 2017. 6. 19.
- 「초·중등교육법」 개정(' 17.3.21.)에 따라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 1)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
 -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13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13조의2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

1)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13조의2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2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13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13조의2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13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13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13조의2제10항)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13조의2제11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13조의2제12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13조의2제13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제14항)

3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5. 8.

• 마감일자 : 2017. 6. 19.

○ 「유아교육법」 개정(' 17.3.21.)에 따라 유아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 유아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 1) 유아교육법(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7조의2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통계 작성·제출

- 1) 유아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7조의2제4항)
-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7조의2제6항)
-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7조의2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7조의2제8항)
-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7조의2제9항)
-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7조의2제10항)
-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7조의2제11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2제12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7조의2제13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제14항)

31. **에양수산부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5. 15.

○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하여 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지원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고, 남해어업관리단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어업지도과를 신설하여 어업 지도·단속, 지도선 운항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주지원을 신설하여 내륙 지역 수산물 안전사고 대응 및 수출수산물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극지 수로조사와 해도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6명(연구사 6명),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 인력 1명(6급 1명), 보령·서천 지역 민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육종연구센터 내 해조류 보급 전담 인력 1명(연구사1)과 참다랑어 연구·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종전에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 업무를 항만지역발전과장이 분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만투자협력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20.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을 “종합 안전 위생점검” 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470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3.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5. 30.

- 송유관안전관리자 직무대행과 관련한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16.12)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가.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간 규정(안 제4조제5항)
대행기간은 ①여행·질병 등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 ②해임·퇴직의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자격 규정(안 제4조제6항)
안전관리 담당업무 단계별 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안전관리 총괄자 대리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대리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 대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미지정시 과태료 규정(시행령 별표2)
직무대리자 지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단계적으로 상향* 부과 및 전문 개정

* 1회위반시 120만원, 2회 위반시 250만원, 3회위반시 500만원

3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20.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

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도록 하던 것을 구분되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등 각 영업장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사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20.
-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HMD(Head Mounted Display) 등을 통해 구현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16조제1호가목단서)
 - 나.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함(안 별표2 제5호나목단서 신설)
 -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 2 제5호라목)

3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21.
- 「도시농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포('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마련 하고자 함

- 가. 텃밭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도시농업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법률개정에 맞게 확대된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제7조,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별표 3 신설)
 - 1) 텃밭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기존 도시농업의 유형을 “곤충사육·양봉”을 반영한 행위(텃밭농사 및 곤충사육과 양봉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리
 - 2)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위한 곤충사육, 양봉의 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등록첨부서류로 곤충사육·양봉계획서를 구비하도록 규정
 - 3)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등록증에 곤충사육 및 양봉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 나.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편성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1) 기존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을 준용하도록 규정
- 다.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증 발급·교부 절차조항 마련 및 별지 신설(안 제6조의3, 별지 9~10호신설)
 - 1) 자격증의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절차 규정
 -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변경발급·재발급 신청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서식

3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21.
- 「도시농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포('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도시농업의 범위 및 도시지역의 범위를 법률과 일치(안 제2조, 제3조)
 - 1)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의 경작·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포함) 행위까지 확대(제2조)

2) 도시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이외에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까지 확대(제3조)

나.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취득기준 및 취득인력을 공공기관에서 의무 활용하기 위한 기준 제시(안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신설)

1)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조건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제시, 이수가 필요한 “도시농업 전문과정” 규정(제1항, 제2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위해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조항 신설 및 수강인원별 도시농업관리사의 적정 인원배치기준 제시(제3항, 제4항)

다. 도시농업 관련 일부 업무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8조의3 제1~3호)

1) 도시농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자격 관련 각종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

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38.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19.

○ 유해화학물질 운송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를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및 별표 1의2신설)

다.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신설)

- 라. 교통사고보고서 사업용자동차 정보 작성시 세부용도를 구분토록 하여 차량용도별 사고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별지 제11호 서식)
- 마. 자동차 주행거리 기반 교통 사고지표 관리 등을 위해 교통안전정보 관리항목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추가함(안 제17조)
- 바. 교통시설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등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2호, 제5호, 제8호 서식)

39.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19.
-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운행기록장치 임의조작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며,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지정행정기관에 「화학물질관리법」을 관장하는 환경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지정행정기관에 환경부를 추가(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 나. 일정수준 이상 교통사고 사상자를 유발한 버스·화물업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및 점검 방법 등을 규정(안 제20조제3항)
- 다. 교통시설 개통전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 신설에 따라 개통전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을 규정(안 별표 2)
- 라. 일반·특별안전진단 기관이 교통안전진단 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조 삭제)
- 마.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48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임의조작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9)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19.
-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 설치기준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함.

4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19.
-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항 신설)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관하여 지자체별로 소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안 제14조제2항)
세대간 경계벽을 벽돌조로 설치하는 경우 줄눈 부위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세대간 소음이 차단되도록 함.

4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19.

- 리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세청)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5. 15.
-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17명(6급 3명, 7급 14명),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송무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세청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인)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6. 19.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의 우선 공급은 수권자만 지원하고 있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가 주거문제로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도록 함

- 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26조제2항)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로 동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
부대상자가 아니라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함

4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 예고일자 : 2017. 5. 10. • 마감일자 : 2017. 5. 15.
-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두는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속초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하며, 세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생직렬을
조리직렬로 정원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의 정규조직으로 전환
 -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두는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
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을 세관관서 공무원정원으로 전환
- 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연장
 - 속초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
년 11월 30일로 연장
- 다. 위생 조리직 정원조정
 - 조리직 채용을 위하여 위생직 정원을 감축(9급 △2명)하고 조리직정
원을 증원(9급 2명)

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11. • 마감일자 : 2017. 6. 20.
-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한 현
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하고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

열상자, 저울의 미설치를 허용하되 전기냉동 냉장시설은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이력번호조회를 통해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면제 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타식품판매업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간소화(안 제51조의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완료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조제유류)을 추가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 나.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0)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전기냉동 냉장시설의 경우는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 영업시설 기준을 개선함

- 다. 이동식 도축장 허용(안 별표10)

차량을 이용하여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도축업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 완화(안 별표 13)

정부가 운영하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http://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도축검사 증명서를 확인 가능한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함

4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5. 11
- 마감일자 : 2017. 6. 23.
- 로봇산업 발전방안('16.11.16.)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로봇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보급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 보완하고 로봇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現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심

의회로 변경하는 한편, 미래 신산업인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18년 6월 30일 종료되는 현행 제도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조항의 재배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로봇 제품 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안 제10조 신설)

1) 로봇제품의 수요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시장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 제도를 신설함.

나. 로봇산업 진흥 및 보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 보완(안 제9조 보완, 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등)

1) 보급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로봇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시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촉진코자 함.

다.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심의기구인 심의회로 변경(안 제5조의2)

1) 범부처 협력기구인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기능 및 조정,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로봇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라. 법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제2조)

1) '18.6.30까지인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로봇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48.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5. 11. • 마감일자 : 2017. 6. 20

○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인 특허법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고, 변리사 시험 합격자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현행화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 변리사 제2차 시험 일부 면제자의 응시과목 조정(안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별표 1)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특허법을 포함하여 2과목을 응시하도록 함

나. 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4항, 제16조의5제2항, 제22조의2제3호)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징계의결 결과의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변리사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등을 반영

49.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5. 11. • 마감일자 : 2017. 6. 20.

○ 산불조사감식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와 조사감식의 확대를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5. 11. • 마감일자 : 2017. 5. 22.

○ 2008. 6.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하 ‘질서법’)이 시행(2007. 12. 21.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개별법보다 질서법이 우선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법령에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질서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개별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질서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중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등 시행령 12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 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1조)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항, 제5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2조)

- 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6조 삭제(안 제3조)
- 라.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항 삭제 및 제3항 자구수정(안 제4조)
- 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5조)
- 바.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삭제(안 제6조)
- 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7조)
- 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삭제(안 제8조)
- 자.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삭제(안 제9조)
- 차.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2조 삭제(안 제10조)
- 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제9조 삭제(안 제11조)
- 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삭제(안 제12조)

5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5. 11. • 마감일자 : 2017. 6. 20.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정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시점 및 평가 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특정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특정평가 대상 선정 시기를 유연화하는 등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동 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마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이 전 부처의 평가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R&D 수행 부처의 과제평가 체계를 관리(점검·개선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성과평가실시계획 마련 시점 조정 및 특정평가 제도 정비 등(안 제2조 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당해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성

과평가실시계획 마련 시점을 전년도 3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변경하고 성과평가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 특정평가 대상사업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게 되어 있어 현안 발생 시 특정평가를 통한 즉시 대응이 어려워 대상 확정 날짜를 삭제하고 필요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특정평가 대상 선정 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와의 협의 근거를 신설하여 특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설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사업 기획안 및 계획서 등 추가(안 제3조 제1항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별 전략목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 시 사업의 기획 의도 및 내용, 추진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기획안 및 계획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의 과제평가 체계 관리 근거 마련(안 제9조 제3항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종료·추적평가 자료 제출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항 단서 신설)

- 동법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평가(종료·추적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 평가의 실효성 및 피평가자의 평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성과평가 결과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마. 성과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기 조정(안 제11조 개정)

- 당해 정책·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시기를 현행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함

바.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간 정보연계 항목 및 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제3항 신설)

-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류하는 정보의 대상을 사업과 과제의 연구 및 성과정보, 평가 정보, 평가위원 정보, 성과활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및 평가위원 후보
단과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 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11. • 마감일자 : 2017. 6. 21.
-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
취를 거치도록 하고, 공동구 안전점검 기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에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녹지·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면제사유 추가(안 제21조제2
항)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하
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
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절차
를 간소화 하고자함.
- 나.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시 3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재
검토 시행(안 제29조제1항)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10년 이상 장기미집
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를 하고
있으나, 3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재검토 대상을 확대함.
- 다. 공동구 안전점검 기준 일원화(안 제39조제5항)
공동구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른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
록 일원화함.
- 라.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준 완화(안 제84조의2 및 제93

조의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를 통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존부지에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하여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도시·군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안 제95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거치도록 함.

5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5. 11. • 마감일자 : 2017. 5. 16.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게이트웨이 운영 인력 보강에 필요한 14명(6급 3명, 7급 5명, 8급 6명)과 실업크레딧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0명(8급 10명, 9급 10명)을 증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정부부처 협업센터 운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등 총 4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5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5. 12. • 마감일자 : 2017. 5. 15.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설치 지부,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부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등 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을 규정
- 나.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정하고, 조정부의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의 기준, 사건의 분리·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
조정신청인 등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와 환급 가능한 경우, 조정신청 및 조정서류 송달 관련 절차를 규정

5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12. • 마감일자 : 2017. 6. 22.
-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행자 등록 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 근거조항 마련(안 제13조의2)

- 나.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시험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근거조항 개선(안 제27조의2)

5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12. • 마감일자 : 2017. 6. 22.
-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지자체별 진단시기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법령 용어를 명확화하며,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건축연면적 용어 명확화(안 제16조의2)
 -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분야 명확화, 인증시험 운영제도 개선, 대행자 등록변경업무 위탁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제58조,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 다. 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진단주기 등 개선(안 제72조의2)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5. 12. • 마감일자 : 2017. 6. 22.
-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절차를 법제처 「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에 따라 개선하고,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 방안」으로 특수전문교육 위탁수행기관 교육업무 종사자,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기관 업무 부당 운영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추가(안 제38조제1항)
 - 나. 법제처 「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절차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안 제38조)
 - 다. 특수전문교육과정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련(안 제76조의2, 제77조)